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050
----------	------

제출연월일 : 2020. 6. 2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2호)

중전에는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보던 것을,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환경성질환에 포함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2 신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안 제15조, 안제31조제2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시·도지사에게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있다고”를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 또는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시행)”을 “(종합계획 등의 시행)”으로 한다.

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건 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에”를 “이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을 “임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
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
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
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
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
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

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성질환”을 “환경성질환(해당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학교”를 “대학교, 대학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u>있다고</u>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p> <p>3. ~ 8.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있다고</u> <u>인정되는 질환 또는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u> ----- -----.</p> <p>3. ~ 8.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u></p> <p><u>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u></p>

	<p><u>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p> <p><u>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 ③ (생략)</p> <p>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p>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② (생략)</p> <p><u>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구</u></p>	<p>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p>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② (생략)</p> <p><u>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u></p>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

② -----

----- 이에 -----
-----.

제9조의2(지역환경보전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전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 4. (생략)

④·⑤ (생략)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 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임명
-----.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

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 제17007호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신 설>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 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

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① -----

----- 환경성질환(해당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에 한정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